

하나자산운용 이사회내 위원회 2년 초과 연임 공시

1. 근거 내규

- 당사 「사외이사 운영 규정」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연임 제한)

2. 2년 초과 재임 내용

대상 이사회내 위원회	2년 초과 재임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창구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대상 이사회내 위원회	2년 초과 재임 위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안성윤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3. 2년 초과 연임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총수는 3인으로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위원회(5개)의 수를 고려할 때, 사외이사에 대해 2년 초과 연임 제한 시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의 2년 초과 재임이 불가피한 상황임.